

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조 [계약기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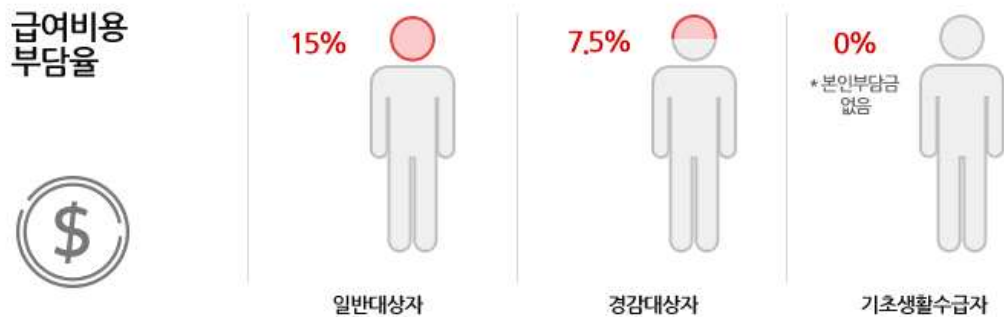
- * 복지용구의 대여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인증 유효기간과는 별도로, 일반적으로 1년간 연간 한도액 160만이 다시 생성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- *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'복지용구 급여확인서'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인정한 제품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되,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 대여가 가능하고,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구매의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이용이 가능하다.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미끄럼 방지양말은 6켤레, 미끄럼방지매트 및 자세변환용구는 각각5개, 간이변기2개, 안전손잡이4개 이상은 판매할 수 없다.

제2조 [계약목적]

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구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[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]

* 급여비용 본인부담률



* 급여비용 연간한도액

-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: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,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(**연간한도액 160만원**)
-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: 복지용구급여비용(공단부담액+본인부담액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(160만원)을 초과하면,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

* 급여기준

-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·형태·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·대여 가능
- 연간한도액 적용기간(160만원/1년) 중 **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, 미끄럼방지매트·방지액은 5개, 자세변환용구는 5개, 안전손잡이는 4개,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**
- 내구연한 중 훼손·마모되거나,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『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』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
-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**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·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.**
- **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** 복지용구를 구입·대여 불가.
-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**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**를 대여 불가.

제4조 [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]

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(이하 ‘보호자’에 포함)을 지정하여야 하며,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1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
-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③ 기관의 만족도조사,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2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
-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
-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

제5조 [계약의 해제]

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보호대상 등급 인정을 받으신 수급자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. 단,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병원에 입소할 시에는 그 시점부터 계약을 해제하고 급여를 중단한다.